

광주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66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6679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가단1720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임준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성주, 김범준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11. 2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가단1720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C'라는 상호로 가라오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원고의 지인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영업장에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고, 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12.경부터 2017. 1. 15.경까지 한국에서 여종업원 8명을 구하여 원고 영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였고, 위 영업장에서 위 여종업원들을 관리한 다음, 2017. 1. 22.경 위 여종업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1월경 현금으로 4,000싱가포르 달러(당시 환율 350만 원)를 지급하였고, 2017. 1. 27. 01 : 00경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17. 1. 28. 원고의 요청에 따라 5,000,000원을 돌려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8. 3. “피고가 가라오케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19. 1. 9.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5,000,000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여종업원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4,000싱가포르 달러 및 여종업원에게 지급할 선불금 명목 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4,000싱가포르 달러는 피고가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원고 영업장에서 여종업원 소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35,000,000원은 원고 영업장에서 실제 일한 여종업원 8명에 대한 급여 및 숙박비용 등 명목으로 받은 다음 원고와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룬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2017년 1월경 피고에게 각 지급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26. 오후 8 : 56경 원고에게 새로운 여종업원으로 일할 여성들의 사진을 보냈고, 원고는 여종업원 사진을 확인한 다음 4시간 정도가 지난 2017. 1. 27. 1:00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보낸 사실, 원고가 2017. 4. 1. 피고에게 “정리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1일날 500만 원씩 애들 보내는 부분에서 금액 책정해서 그 부분도 같이 갚아 가겠습니다”, “애들은 계속 구해서 면접봐서 보내는 걸로 하겠다”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① 피고가 2016년 12월경 원고와의 약정대로 한국에서 여종업원 8명을 구하여 싱가포르에 있는 원고 영업장에서 일을 하게 한 다음 2017년 1월경까지 위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도 크게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나 여종업원의 급여 및 숙박비용을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원고는 피고를 통해 여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5,000,000원 중 상당한 금원은 그대로 다시 원고 영업장에 근무했던 여종업원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은 피고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이후 2017. 5. 11.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너한테 얘기한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니들한테 해도 상관없지? 니들이 나한테 마지막 남은 배려만도..이 앵버리 같은 놈들아.”라는 내용으로 메시지(갑 제3호증)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동업한 D의 부탁으로 D이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부분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대신 답변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업무협의를 할 당시 동석하였다는 E이 밝히고 있는 업무협의 내용과 원고 영업장에 근무하였던 여종업원이 밝히고 있는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년 1월경 피고에게 각 지급한 돈은 피고가 이미 행한 업무에 대한 급여 및 여종업원들에 대한 급여, 숙박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 1)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운 여종업원 소개를 요청하면서 그 새로운 업무를 위한 착수금 및 선불금 명목으로 4,000싱가포르 달러 및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하,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